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br>금융위원회 | <h1>보도자료</h1>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| 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포 후 즉시 |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책임자  | 금융위원회 보험과장<br>김동환(02-2100-2960) | 담당자     | 김기훈 사무관<br>(02-2100-2962) |   |

## 제 목 :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-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-

### 1 | 개정 배경

□ 「보험업법」 개정(‘20.5.19일)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“보험회사의 발기인등\*”에서 “보험회사”로 변경되었습니다.(‘20.11.20일 시행)

\* 보험회사의 발기인, 설립위원, 이사, 감사, 검사인, 청산인 등

○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「보험업법」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.

< 보험업법 개정 이유 (‘19.7.29,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) >

- ‘18.12월 보험업법 등\*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이 신설 (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)
- \* 보험업법, 은행법, 상호저축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
- 상호저축은행법,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,
  -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, 보험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보험업법 개정 추진

□ 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\*, 보험요율산출기관(보험개발원)의 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.

\* [보험모집 비중 규제(25%rule)] :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%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

## 2

## 개정 내용

① 「보험업법 시행령」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“보험회사의 발기인등”에서 “보험회사”로 변경됩니다.

- (현행)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“보험회사의 발기인등”에 대해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- (개정)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“보험회사”에 대해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 부과

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.

- (현행)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(25%를)를 '20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('17년 시행령 개정)
- (개정)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('21년 66% → '22년 50% → '23년 33% → '24년 25%)

※(참고)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,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“카드슈랑스 활성화 TF”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·추진할 계획

③ 보험요율 산출기관(보험개발원)의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.

- (현행)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‘순보험요율\* 산출·검증’, ‘보험에 대한 조사·연구’ 등을 규정

\* 보험금의 지급에 총당되는 보험료(순보험료)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 →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하여 개별 보험사가 보험요율 결정

- (개정)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(i)차량정보 관리\*(부품정보, 사고기록정보 등), (ii)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\*\*를 추가

\* [차량정보 관리]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, 수리기간 단축

\*\* [차량수리비 연구]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는 '92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이나, 법령상 근거 부재

- 이번에 개정되는 「보험업법 시행령」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### < 금융 용어 설명 >

- 금리인하요구권 :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 -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'19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%,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%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

<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(단위 : 건) >

| 구분 |      | '17년  | '18년   | '19년   |
|----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총계 | 접수건수 | 8,306 | 12,167 | 34,705 |
|    | 수용건수 | 4,906 | 6,444  | 18,801 |

#### \* 보험업법 제110조의3(금리인하 요구)

-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.
-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|  |   |  |   |   |   |
|--|---|--|---|---|---|
| <br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<br>출처표시 | 본 자료를 인용 보도<br>할 경우 출처를 표기<br>해 주십시오.<br>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 | 금융위원회 대 변 인<br>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 | <br>질병관리본부 콜센터 | <br>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<br>해외감염병 NOW |
|--|---|--|---|---|---|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